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성폭력

The Right to Women's Body and Sexual Violence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가족아동학과
김성희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Full-time Lecturer : Kim Su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based on the right to women's body. For empirical analysis, the data on 376 female students and 320 male students on two universities were collect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Most of male students usually did sexual violence to women and lots of female students easily were invaded her right to body. The range of conception which the students perceived as sexual violence was wider than that of related laws. Thus in order to secure sexual equity this study proposed that laws should reflect widely the right to women's body, and that male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 respect it.

I. 서론

민주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개인이라는 범주를 통해 그 존엄성을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신체는 개인이라는 범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자연적 단위이다.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서로 신체에 대한 권리

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침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족과 가문을 재생산해야 했고 남성에게 쾌락을 제공해야 했다. 남성의 신체가 쾌락의 주체로서 보호받고 통제권을 인정받아온 것과는 달리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성적 대상물로

쉽게 취급되었고 욕구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인정받지 못하였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러한 불평등한 차별은 양성 평등의 민주사회를 지향해 가는 현재에도 성폭력을 통해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 을 상대로 한 성적 추행이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것은 여성이 여전히 남성의 욕구충족의 대상물로 취급되고 있고 그 주체적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적 삶과 양성평등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대학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이다. 이 집단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는 미래 민주社会의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받고 침해당하고 있는지 여대생의 성폭력 피해 실태 및 남대생의 가해 실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성폭력과 관련된 법은 강간, 음행매개, 음란물의 유포 및 제조 등 몇몇 행위에 대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로서 일상적으로 겪는 성폭력은 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 경향신문(1996)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며 섹시하다고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성폭력으로 느낀다고 한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실제 범죄로서 인식하는 성폭력의 범주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성폭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가해자인 남성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 보호는 성폭력 유발자인 남성의 경험과 의식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경험과 의식을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당위성을 제공하리라고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의 권리와 성폭력 개념

근대 민주주의의 법제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범주를 통해 포착되므로 기본권 개념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개별 신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주체가 여성인 남성이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관련된 모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영역은 이동의 자유,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을 권리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권리이다. 사적인 영역 즉 욕망과 관련된 영역에서 여성의 신체 권리가 소극적으로 보호되고 있다.¹⁾

신체의 권리로서 자기결정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은 자신의 신체와 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욕망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ong, 1984).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는 1995년 형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었다(배은경, 1997). 정조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족과 가문의 정통성을 보호하고 이를 재생산하기 위해 강조되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는 개인의 정체성이 자리잡은 주체로서보다 가족의 존속을 위한 공적 자산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조에 관한 죄는 형법 개정으로 죄목이 강간과 추행으로 바뀌어 보다 포괄적으로 여성의 신체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은 인격의 주체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가부장적 차별 속에서 일상으로 겪는 수많은 성폭력은 아직 법의 관심 밖에 있다. 지하철 성추행범의 76%가 대졸 이상자라는 보고는(조선일보, 1996), 여성의 신체가 공공장소에서 조차 성적 대상물로 취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제함에 있어 법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성폭력과 관련된 법은 강간 및 강제추행, 음

1) 여성학에서는 사적인 측면에서의 신체의 권리를 '몸'의 권리로 개념화하기도 한다(심영희, 1995).

행매개, 음란물의 유포 및 제조, 공연음란, 약취유인, 강도강간, 특수강간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을 규제하고 있다(배은경, 1997; 심영희, 1992). 그러나 여성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상적인 성폭력 사건과 극단적 사건들 간에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 성차별적인 공통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성폭력상담소(1995)에서는 성폭력을 현실적으로 규정하여 음란한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언동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현행법처럼 성폭력을 독립된 행위로 규정할 경우 특정 죄목으로 기소된 사건이 무죄로 판결될 경우에는 이를 다른 죄명으로 처벌할 수 없어 다시 기소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배은경, 1997). 이런 문제로부터 미국에서는 성폭력을 연속선적인 것으로 보고 등급화하여 특정 성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범죄가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심영희, 1995).

성폭력을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기본은 같은 연속선상의 것으로 개념화할 때(Kelly, 1987) 여성이 경험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성폭행을 포착할 수 있고 범죄로서 구성하기도 쉬워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속성의 개념(continuum of sexual violence)에 따라 성폭력을 성희롱²⁾ 또는 강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언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성폭력 경험 실태를 조사한다.

2.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 실태

1997년 서울대 대학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학생 중 93.5%가 언어적 유형의 성적 괴롭힘을 경험하였고, 76.5%의 여학생이 비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78.4%의 여학생이 물리적 유형의 성적 괴롭힘을, 9.1%의 여학생이 강제 애무나 키스를 경험하였다. 강간미수를 경험한 여학생도 1.5%나 있었다.

1994년 동국대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는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행위에 대해 26%가, 노골적으로 피부 접촉을 하는 행위에 대해 26%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9%, 강제로 데이트를 요구하는 행위는 26%, 강간 등 직접적인 폭력 행위도 1%가 경험하였다(동국대 여학생부처, 1995).

1996년 여성연대회의가 실시한 학내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교수에 의한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51%였고, 학내 남학생에 의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41%였다. 이해은(1998) 연구에서는 일반적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여대생은 91.4%였고, 유혹적 유형의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여대생은 60.7%, 폭력적 유형의 경험자는 18.6%였다.

미국의 경우는 1983년 미시간 대학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25%가 성희롱을 1회 이상 경험하였다고 한다(Maihoff & Forest, 1983). 애리조나 주립대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가 성희롱이 대학 내에 존재하는 문제라고 인식하였고 응답자 중 40%는 성희롱으로 인해 업무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Metha & Nigg, 1983).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혼자 살수록 그 피해가 많았다(심영희, 1993). 그러나 여대생의 경우 공미혜(1997)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은 경우, 비전형적인 전공을 택하고 있는 경우, 비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남녀 공학에 다니는 여학생일수록 객관적 성희롱의 경험이 많았다. Terpstra & Cook(1985)의 연구에서는 남성비율이 높을수록 성희롱의 가능성성이 높았다. Fitzgerald(1991)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나이가 어릴수록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성희롱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2) 최근에는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개념의 핵심이 되는 권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아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이해은, 1998).

분류하였다. 그리고 연령을 나타내는 학년, 집단의 남성비율을 나타내는 학과의 여학생 비율, 성역할태도를 성폭력 관련 요인으로 보았다. 이 외에 대학생의 사회화 요인으로 부모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이들과의 동거 여부, 생활지도 관여의 정도도 조사에 포함시켰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여대생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남대생의 성폭력 가해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여대생과 남대생이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성폭력 범주 인식과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여대생과 남대생의 성폭력 경험과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성폭력 경험 빈도, 성폭력 범주 인식, 성역할 태도, 학년, 학과의 여학생 비율, 거주형태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경험 빈도

공미혜(1995), 한국성폭력상담소(1992)의 자료를 참고로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성폭력을 그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각각 2문항씩 구성하였다. 그리고 6문항을 합하여 총 성폭력 경험을 산출하였다. 빈도에 대한 응답은 ‘없다’ = 1 ‘한 두번’ = 2 ‘여러 번’ = 3 ‘자주’ = 4로 분류하여 수가 커질수록 성폭력 경험이 많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2) 성폭력 범주 인식

공미혜(1995),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배은경(1997), 경향신문(1996)을 참조하여 남성이 섹시하다고 불쾌

하게 말하는 것, 데이트 중 강제로 입맞춤하는 것, 회식 중 술따르기를 강요하는 것, 데이트를 강요해서 괴롭히는 것, 불쾌한 신체접촉, 불쾌한 음담패설에 대해 평소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렇다고 하는 것에 0, 아니라고 하는 것에 1을 부과하였다.

3) 성역할태도

성차별적 의식에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역할 태도는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에 관한 문항을 성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연적/생물학적 모델, 조직적 모델, 사회문화적 모델, 성역할 이월(spillover) 모델로부터(Gutek and Morasch, 1982; Sheffey and Tindale, 1992; Tangri, Gurt, and Johnson, 1982)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성충동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강하다’, ‘여성은 가급적 집단의 화합을 위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 ‘데이트 신청은 여성이 먼저 하기보다 남성이 먼저하는 것이 좋다’, ‘여성은 남성에게 늘 어디서나 연인같은 존재로 보이는 것이 좋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형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다.

문항간 상관도인 Cronbach's Alpha는 서로 다른 모델에서 추출되어 .64으로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선행연구(공미혜, 1995)에서 모델의 타당성이 검토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크게 왜곡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3. 조사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가부장적 전통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전남과 강원 지방의 두 대학교를 임의표집하여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통신매체의 보급은 지역간 대학생의 의식 차이를 감소시켜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간 차이 조사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다.

설문지는 1997년 9월에 예비조사를 거쳐 1998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여대생 빈도(%)	남대생 빈도(%)
학 년	1학년	107 (28.5)	150 (46.9)
	2학년	80 (21.3)	64 (20.0)
	3학년	108 (28.7)	62 (19.4)
	4학년 및 대학원	81 (21.5)	44 (13.7)
학과의 여학생 비율	2/3 이상	220 (58.5)	35 (10.9)
	2/3-1/3정도	111 (29.5)	110 (34.3)
	1/3이하	45 (12.0)	175 (54.7)
거주형태	부모와 거주	235 (62.5)	159 (49.7)
	자취, 하숙, 기숙사, 기타	141 (37.5)	161 (50.3)
계		376(100.0)	320(100.0)

5월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학생이 되어 경험한 바를 근거로 이에 응답토록 하였다. 여대생과 남대생에게 각각 400부씩 총 800부를 배포하고 회수된 696부(여대생 376, 남대생 320)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평균, 빈도분포, 백분율, t-검증, 일원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1. 성폭력 경험 실태

여대생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 경험 실태는 〈표 2〉와 같다. 시각적 성폭력으로서 가슴 등 신체의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보아 불쾌했던 경험은 한 두번 이상이 48.5% 이었다. 외설적 그림이나 글을 보게 해서 불쾌했던 것은 31.9%가 이를 한 두번 이상 경험하였다.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당해 불쾌했던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두번 이상이 44.9%였고, 음담패설을 듣고 불쾌했던 적이 한 두번 이상 있는가에 대해서는 66.8%가 이를 경험하였다.

신체적 성희롱으로서 신체 일부를 고의로 밀착시

키거나 만져서 불쾌했던 경험이 한 두번 이상 있었던 경우는 43.5%, 키스나 껴안기, 성교를 강제로 당해 불쾌했던 경우가 한 두번 이상 있었던 경우도 10.3% 있었다.

여대생은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으로 거의 모든 신체의 영역에서 성폭력의 경험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언어적 성폭력으로서 음담패설과 신체적 성폭력으로서 신체 일부를 고의로 밀착시키거나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조사에서 껴안기, 키스, 성교의 경험이 10.3%였던 것은 서울대(1997)의 조사에서 애무나 키스의 성폭력 경험이 9.1%였던 것과 유사하였다.

남대생의 경우 성폭력 가해 경험 실태를 보면 〈표 3〉, 여성의 가슴 등 신체를 음흉한 의도로 쳐다보았던 적이 있다고 한 경우는 74.0%로 대부분의 남대생은 시각적 성폭력을 가해한 경험이 있었다. 외설적 그림이나 글을 음흉한 의도로 여성에게 보게 한 경험이 한 두번 이상 있었던 학생은 19.0%, 여성의 외모나 옷차림을 음흉한 의도에서 평가해 본 적이 있었던 학생은 66.9%였다. 음담패설을 여성에게 불쾌한 의도로 들려주었던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34.0%가 한 두번 이상 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밀착시키거나 만져본 적이 있었던 경우는 28.1%, 키스나 껴안기, 성교를 강제로 해본 적이 있는 경우도 19.4%나 있었다. 껴안기, 키스,

〈표 2〉 여대생의 성폭력 피해 경험 빈도

(N=376)

경험의 유형		빈도	없다 (%)	한두번 (%)	여러번 (%)	자주 (%)	계 (%)
시각적	신체 일부 쳐다보기	190 (51.5)	157 (42.5)	17 (4.6)	5 (1.4)	369 (100.0)	
	외설적 그림이나 글 보게 하기	252 (68.1)	102 (27.6)	13 (3.5)	3 (0.8)	370 (100.0)	
언어적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당하기	201 (55.1)	144 (39.5)	17 (4.7)	3 (0.8)	365 (100.0)	
	음담패설 듣기	122 (33.2)	183 (49.9)	50 (13.6)	12 (3.3)	367 (100.0)	
신체적	신체 일부의 밀착·접촉	209 (56.5)	156 (42.2)	4 (0.5)	1 (0.3)	370 (100.0)	
	껴안기, 키스, 성교	330 (89.7)	35 (9.5)	2 (0.5)	1 (0.3)	368 (100.0)	

〈표 3〉 남대생의 성폭력 가해 경험 빈도

(N=320)

경험의 유형		빈도	없다 (%)	한두번 (%)	여러번 (%)	자주 (%)	계 (%)
시각적	신체 일부 쳐다보기	81 (26.0)	115 (36.9)	63 (20.1)	52 (17.0)	312 (100.0)	
	외설적 그림이나 글 보게 하기	252 (81.0)	33 (10.6)	12 (3.9)	14 (4.5)	311 (100.0)	
언어적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하기	103 (33.1)	111 (35.7)	53 (17.0)	44 (14.2)	311 (100.0)	
	음담패설 듣게 하기	204 (66.0)	56 (18.1)	26 (8.5)	23 (7.4)	309 (100.0)	
신체적	신체 일부의 밀착·접촉	223 (71.9)	47 (15.2)	15 (4.8)	25 (8.1)	310 (100.0)	
	껴안기, 키스, 성교	250 (80.7)	33 (10.6)	8 (2.6)	19 (6.1)	310 (100.0)	

성교의 가해 경험이 적지 않은 것은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인식함에 있어 성의 대상물로 인식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2. 성폭력 범주에 대한 인식

여대생은 성폭력 범주에 대해 일상적인 불쾌한 성적 행위도 성폭력으로 인식함으로써 성폭력을 연속

〈표 4〉 성폭력 범주에 대한 인식

불쾌한 행위	성별 (N)	성폭력이다 N(%)	성폭력아니다 N(%)	평균 (SD)	(N=696) <i>t</i> 값
특정 신체부분을 보면서 섹시하다고 말하는 것	여대생(374)	277(74.1)	97(25.9)	0.26(0.44)	-13.46***
	남대생(318)	90(28.3)	228(71.7)	0.72(0.45)	
데이트 중 강제로 입맞춤 하는 것	여대생(366)	221(60.4)	145(39.6)	0.40(0.49)	-3.19**
	남대생(317)	153(48.3)	164(51.7)	0.52(0.50)	
회식 중 술따르기를 강요 하는 것	여대생(369)	204(55.3)	165(44.7)	0.45(0.50)	-5.16***
	남대생(317)	114(36.0)	203(64.0)	0.64(0.48)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신 체접촉	여대생(372)	351(94.4)	21 (5.6)	0.06(0.23)	-5.38***
	남대생(318)	259(81.4)	59(18.6)	0.19(0.39)	
거절에도 불구하고 데이 트를 강요하는 것	여대생(372)	194(52.2)	178(4.78)	0.48(0.50)	-3.85***
	남대생(316)	119(37.7)	197(62.3)	0.62(0.49)	
음담패설	여대생(372)	319(85.8)	53(14.2)	0.14(0.35)	-3.89***
	남대생(317)	234(73.8)	83(26.2)	0.26(0.44)	

P<.01 *P<.001

선상의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4).

즉 특정 신체 부위를 보며 섹시하다고 불쾌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 74.1%가 이를 성폭력으로 보았고, 고의적인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94.4%가 이를 성폭력으로 보았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음담패설에 대해서는 85.8%가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남대생은 특정 신체 부위를 보며 섹시하다고 불쾌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 28.3%가 이를 성폭력으로 보았고, 고의적인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81.4%, 음담패설에 대해서는 73.8%가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였다. 거의 모든 성폭력의 범주에서 남대생은 여대생보다 성폭력 범주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남대생의 무의식적 가해, 여대생의 불쾌한 피해 경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고의적인 신체접촉, 음담패설에 관해서는 남대생과 여대생 모두 비교적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율이 높았지만, 회식 중 술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대생의 36.0%, 여대생의 55.3%, 데이트 중 강제로 입맞춤하기에 대해서는 남대생의 48.3%, 여대

생의 60.4%, 데이트를 강요해서 괴롭히기에 대해서는 남대생의 37.7%, 여대생의 52.2%가 이를 성폭력으로 간주하였다. 가까운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언동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특히 남대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폭력 범주에 대한 인식은 여대생과 남대생 모두에게 있어 성역할에 태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5).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집단에서 성폭력을 더 폭넓게 인식하였다.

3. 성폭력 경험과 관련된 요인

여대생의 성폭력 경험과 관련있는 변수는 거의 모든 성폭력 영역에서 학년이었다(표 6). 즉 학년이 높을수록 성폭력의 경험이 많았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희롱의 경험이 높았다는 공미혜(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은 남학생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5〉 성폭력 범주 인식과 관련된 요인

(N=696)

집단	변수	여대생			남대생		
		평균(빈도)	F값	Scheffe	평균(빈도)	F값	Scheffe
학년							
1학년		1.75 (106)			3.09 (148)		
2학년		1.80 (75)			2.89 (62)		
3학년		1.81 (104)	0.138		2.72 (58)	0.962	
4학년 및 대학원		1.69 (74)			2.77 (43)		
학과의 여학생비율							
2/3이상		1.75 (220)			2.85 (33)		
2/3-1/3		1.81 (108)	0.112		2.74 (107)		1.320
1/3이하		1.69 (43)			3.06 (168)		
부모의 생활지도							
매우 엄격히 관여		1.73 (82)			2.73 (45)		
약간 관여		1.77 (208)			3.03 (193)		
거의 관여치 않음		1.80 (59)	0.062		2.62 (47)	1.311	
전혀 관여치 않음		1.63 (8)			3.23 (26)		
성역할 태도							
전통적: 6-10점		1.99 (85)		a	3.04 (141)		a
중 간: 11-13점		1.90 (144)	4.72***	a	3.07 (122)	4.004**	a
진보적: 14점 이상		1.49 (124)		b	2.31 (45)		b

P<.01 *P<.001

a, b: 서로 다른 문자의 집단간에는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

학과의 여학생 비율은 시각적 영역의 음흉하게 쳐다보기에서만 여대생의 성폭력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여학생 비율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성적 대상물로 시선을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태도는 전통적인 경우에 시각적 음란물에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폭력 영역에서 경험과 관련이 없었다.

부모와의 거주 여부, 부모의 생활지도 관여 정도는 여대생의 성폭력 경험과 관련이 없었다. 여대생의 성폭력은 부모의 통제와는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여대생은 자신이나 부모의 통제와 관계없이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대생의 경우는 성폭력 범주 인식이 성폭력의 모든 영역에서 가해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표 7).

즉 여성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여성에 대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성폭력 가해 경험이 많았다.

부모와의 거주 여부, 부모의 생활지도 관여는 여대생과는 달리 많은 성폭력 영역에서 남대생의 가해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부모가 생활지도에 엄격히 관여하지 않을수록 언어적 신체적 영역에서 가해 경험이 많았고,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선으로 가해하기, 외모 평가로 가해하기에서 경험이 많았다. 남대생의 경우 여대생과는 달리 부모의 통제가 성폭력 경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대생의 경우 여대생과 다르게 성역할태도도 어느 정도 가해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즉 음담 패설과 신체 일부의 밀착 행위에서 성역할태도가 전

〈표 6〉 여대생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요인

(N=376)

변수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총 경험 $B(\beta)$
	쳐다보기 $B(\beta)$	음란물 노출 $B(\beta)$	외모평가 $B(\beta)$	음담패설 $B(\beta)$	밀착 $B(\beta)$	성적접촉 $B(\beta)$	
학년	-.114 (-.194***)	.062 (.117*)	.086 (.152**)	.130 (.189***)	.100 (.212***)	.027 (.082)	.559 (.269***)
학과의 여학생 비율	.120 (.116*)	.001 (.001)	.095 (.094)	-.038 (-.032)	-.028 (-.033)	.033 (.057)	-.056 (-.015)
부모의 생활지도	-.070 (-.072)	.029 (.032)	-.059 (-.062)	-.109 (-.095)	.056 (.070)	-.003 (-.005)	-.176 (-.050)
부모와 거주	-.020 (-.018)	.001 (.001)	-.041 (-.039)	.062 (.048)	-.018 (-.021)	-.029 (-.048)	-.310 (-.080)
성폭력 범주 인식	.032 (.064)	.028 (.061)	.012 (.026)	-.028 (-.048)	.024 (.060)	.021 (.078)	.109 (.062)
성역할 태도	-.029 (-.033)	-.131 (-.168**)	-.025 (-.030)	.040 (.040)	-.029 (-.041)	-.008 (-.016)	-.206 (-.068)
R	.058	.061	.040	.070	.060	.023	.087
F	2.571**	2.726**	2.091*	3.126**	2.690**	1.010	3.831***

*P<.05 **P<.01 ***P<.001

통적일수록 가해의 경험이 높았다. 학과의 여학생 비율도 관련이 있어서 비율이 낮은 경우 시각적으로 쳐다보기의 가해 경험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Terpstra & Cook(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성중심 집단에서 가부장적 권력이 성폭력으로 더 많이 표출됨을 보여준다.

V. 결 론

신체는 개인의 정체성이 자리잡은 핵심지이므로 민주사회에서 신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 받는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삶은 개인으로서 신체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받고 보호받음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 실태로 볼 때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사회에서 보호받는다고 볼 수 있는 여대

생조차 대부분 남성의 일방적인 음담패설, 고의적인 신체 밀착 등으로 불쾌감을 경험하였다. 여성의 신체는 남성 욕구충족의 대상물이라는 가부장적 차별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남대생의 경우 60%이상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보거나 외모와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해 불쾌감을 준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 평등을 지향해가는 대학사회에서도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까운 사이에서의 신체적 강제와 구속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도 남대생은 여대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체에 대한 권리를 인식함에 있어 남성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지닌 타자(他子)로 인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성폭력과 관련된 법은 몇몇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대생이 성폭력이라고 여기는 범

〈표 7〉 남대생의 성폭력 가해와 관련된 요인

N=320

변수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총경험 $B(\beta)$
	쳐다보기 $B(\beta)$	음란물 노출 $B(\beta)$	외모평가 $B(\beta)$	음담패설 $B(\beta)$	밀착 $B(\beta)$	성적접촉 $B(\beta)$	
학년	.022 (.023)	-.009 (-.013)	-.020 (-.021)	-.006 (-.008)	-.072 (-.087)	.010 (.014)	-.051 -.013
학과의 여학생 비율	.195 (.127*)	-.090 (-.082)	.122 (.081)	-.054 (-.039)	-.019 (-.014)	-.067 (-.057)	.086 (.014)
부모의 생활지도	.129 (.096)	.091 (.093)	.172 (.130*)	.164 (.139*)	.145 (.124*)	.128 (.125*)	.845 (.156**)
부모와 거주	.289 (.139*)	.133 (.089)	.337 (.166**)	.155 (.084)	-.039 (-.021)	-.009 (-.005)	.795 (.094)
성폭력 범주 인식	.136 (.213***)	.082 (.178**)	.100 (.159**)	.099 (.174**)	.133 (.239***)	.094 (.191***)	.645 (.248***)
성역할 태도	-.018 (-.009)	.035 (.033)	-.090 (-.063)	-.151 (-.116*)	-.214 (-.169**)	-.114 (-.102)	-.556 (-.094)
R	.102	.052	.092	.079	.118	.070	.114
F	4.684***	2.263*	4.176***	3.529**	5.518***	3.095**	5.226***

*P<.05 **P<.01 ***P<.001

주에는 매우 일상적인 것도 포함되었다. 특정 신체 부분을 바라보면서 섹시하다고 말해 불쾌감을 주는 것, 고의적인 신체접촉, 음담패설 등이 성폭력으로 간주되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개념이 일상적인 것에서 극단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연속적인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성폭력 범죄를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여성이 경험하는 넓은 범위의 학대와 폭력을 범죄로 포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남대생의 성폭력 가해 경험은 성폭력에 대한 범주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도 성폭력의 개념을 확대시켜 범죄로 인식하는 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Benhabib(1987)는 타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의사소통적 윤리를 제안하였다.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윤리를 도입하여 여성의 사회적 경험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가 가부장 사회에서 성적 대상물로 쉽게 취급되어온 특수한 경험을 고려할 때 신체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경험은 여대생의 경우 학년의 증가에 따른 남성과의 접촉 빈도에 주요한 영향을 받으나 남대생의 경우는 성폭력에 대한 범주 인식과 부모의 통제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평등을 지향함에 있어 여성보다도 남성에게 동반자인 여성의 권리를 인식시키는 학교와 부모의 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대학생은 미래 민주사회 가치와 행동규범을 준비하는 집단으로서 다가올 사회의 준거가 된다. 이들 집단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는 성폭력은 미래 사회도 여성차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남녀가 더불어 사는 민주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남학생에게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정학 관련 또는 여성학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선행단계로서 중등과정에서는 가정교육 및 성교육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1996. 6. 25.
- 공미혜(1995).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여성학* 11, 110-137.
- 공미혜(1997). 여대생들의 성희롱 경험과 의식의 차. *한국여성학* 13(1), 29-50.
- 대학신문(1997). 서울대인의 성적 괴롭힘 실태. 서울 대학교.
- 동국대 여학생부처(1995). 94 여학생 대학생 활, 취업 준비, 성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9, 3-52.
- 배은경(1997). 성폭력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8, 51-77.
-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 나남.
- 심영희(1995). 몸의 권리와 성관련법의 개선안. *한국여성학* 11, 72-109.
- 여성연대회의(1996). 대학=성폭력 박물관: 없는 것이 없다.
- 이혜은(1998).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여대생의 대처양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1996. 12. 4.
- 한국성폭력상담소(1995).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 Benhabib, Seyla(1987). The Generalized and the Concrete Other. Benhabib and D. Cornell (ed.). Feminism as Critique. Polity Press.
- Fitzgerald, L. F.(1991). Sexual Harassment: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a construct. M.

Paludi (ed.). Ivory Power: Sexual Harassment in Academia and the Workplace. New York: suny press.

Gutek, Barbara A. and Bruce Morasch(1982). Sex-Ratios, Sex Role Spillover, and Sexual Harassment of Women at Work. *Journal of Social Issues* 38(4), 73-77.

Kelly, L.(1987). Sexual Violence as a Continuum. in Hammer and Maynard(eds.).

Maihoff, N. and Forest, L.(1983). Sexual Harassment in higher education: An assessment study. *Jour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Women Deans, Administrators, and Counselors* 46, 3-8.

Metha, a. and Nigg, J.(1983). Sexual harassment on campus: An institutional response. *Jour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Women Deans, Administrators, and Counselors* 46, 9-15.

Sheffey, Susan and R. Scott Tindale(1992). Perception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 19, 1502-1520.

Tangri, Samdra S., Martha R. Burt, and Leonor B. Johnson(1982). Sexual Harassment at Work: Three Explanatory Models. *Journal of Social Issues* 38(4), 33-54.

Terpstra, D.E. and Cook(1985). Complaint Characteristics and Reported Behaviors and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Formal Sexual Harassment Charges. *Personnel Psychology* 38, 559-574.

Till, F. J.(1980). Sexual Harassment: A report on the sexual harassment of student: Report of National Advisory Council of Women's Educational Program. Washington, C.D.:U.S. Department of Education.

Tong, Rosemarie(1984). Women, Sex, and the Law. Totowa, NJ: Rowman & Allanheld.